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금을 통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 신설>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20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기금을 통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 신설(안 제67조제1항제25호 신설) ····· 2

※ 참고자료 ····· 7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제도 개요 ····· 7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현황 ····· 10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내역 ····· 11
4.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일반 현황('25년말 기준) ····· 12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4.

3. 회부연월일 : 2026. 3. 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경우 청년 등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성장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기금을 통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 신설(안 제67조제1항제25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24. (생 략) <신 설> 25. (생 략) 26.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 ④ (생 략)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 1. ~ 24. (현행과 같음)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6. (현행 제25호와 같음) 27. ----------제25호----------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사용범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임.[1)]

중소벤처기업부는 2000년부터 대학·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이 높은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총 30개의 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5	2	1	1	1	1	2	7	2	1	1	1	1	2	1	1	-	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행법상 지정된 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등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2)] 및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3]에 따라 자금 우선지원,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짐.

즉, 현행법상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근거는 주로 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담금 및 세제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직원과 그 가족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원에 더하여, 업무시설·주거시설·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삭제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주거·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현재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전체 재원의 약 81.5%)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재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자본투자 성격의 주거·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금 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4)]

<u>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원 조성 현황('25년말 기준)</u>

항 목	금액(억원)	비중(%)
• 부채	244,698	82.0
- 채권발행	243,307	81.5
- 충당부채 등	1,391	0.5
• 순자산(자본)	53,873	18
- 기본순자산	20,571	6.9
- 적립금 및 잉여금	30,327	10.1
- 순자산조정	2,975	1
계	298,571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219호,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임.

4) 2026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219억 3,700만원임.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제도 개요

□ 개요

○ 대학·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이 높은 지역의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00 ~)

* (지정현황) 전국 30개 (수도권 13개, 43%) 지정

□ 연혁

○ 2000년 대학·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이 높은 지역의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 2002년까지 1차 벤처붐의 여파로 전국 24개 지구 지정

○ '01년~"07년까지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정부·지자체 예산 총 3,059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93억원)이 지원돼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지원센터가 총 21개소 건립

○ 2004년 제주지구 추가지정, 2011년 수원지구 추가지정

○ 2010년~2016년까지 전국 26개 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혁신프로그램 지원, 입주 기업간 네트워크 활동 등에 56억원 지원

○ 2017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 없이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 부담금 면제 등 간접 지원

○ 2022년 서울 관악S, 강남지구 추가지정

○ '23.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증가 (37.5% → 최대 50%)

○ 2024년 경기 고양, 화성동탄테크노폴지구 추가지정

□ 지정권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벤처기업법 제18조의4)

□ 지정요건

○ **(사후지정)** 일정지역에 벤처기업이 집적화된 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

- ①해당 지구에 있는 벤처기업 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②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 ③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2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 지정 시 혜택

○ **(세제혜택)** 지구 내 벤처기업에게 감세혜택 부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4항)

- ①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수도권 35%) 감면

- ②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최대 50$^{35\%+조례15\%}$(수도권 최대 35%$^{20\%+조례15\%}$) 감면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면제(벤처기업법 제18조의5)

*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원시설 대상 미술장식 의무 등(벤처기업법 제22조 준용)

○ **(금융지원)** 중기부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 우대 가능,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 우선지원 가능

(벤처기업법 제18조의5)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현황

□ 총괄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5	2	1	1	1	1	2	7	2	1	1	1	1	2	1	1	-	30

□ 지정명단 (30개 지구. 2026.3. 기준)

구분	촉진지구명 (운영기관명)	지정연도	소 재 지	면적 (km2)
서울	영등포 (영등포구청)	'00	영등포동, 여의도동, 문래동	2.60
	홍릉, 월곡 (성북구/한국기술벤처재단)	'01	이문동, 월곡동	0.75
	성동 (성동구/성동벤처밸리)	〃	성수동, 행당동, 도선동	3.00
	관악S밸리 (관악구청)	'22	낙성대동, 인헌동, 행운동, 중앙동, 청룡동,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0.67
	강남구 (강남구청)	'22	역삼동, 도곡동, 삼성동	0.46
부산	대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01	대연동, 남천동, 우동	0.62
	하단 (부산테크노파크)	'01	하단동, 엄궁동	2.22
인천	주안 (미추홀구/인천정보산업진흥원)	'00	주안동, 도화동	0.73
대전	대덕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1	구성동, 궁동, 문지동, 방현동, 신성동, 장동, 전민동, 죽동, 가정동, 도룡동, 어은동, 원촌동, 화암동, 용산동, 탑립동, 덕진동	25.55
대구	동대구성서 (대구테크노파크)	'00	신천동, 범어동, 호산동, 호림동	1.29
울산	울산 (울산경제진흥원)	'00	다운동, 무거동	3.90
광주	금남 (광주광역시 동구청)	'01	대인동, 수기동, 호남동	2.48
	첨단 (광주테크노파크)	'02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3.04
경기	안양 (안양시/안양창조산업진흥원)	'00	안양동,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3.17
	부천 (부천시/부천산업진흥재단)	'01	상동, 약대동, 삼정동, 오정동	1.00
	안산 (안산시/경기테크노파크)	〃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2.83
	성남 (성남시/성남산업진흥원)	〃	상대원동, 야탑동, 수내동, 정자동	4.47
	수원 (수원시/경기벤처기업협회)	'11	고색동, 서둔동, 천천동	1.40
	고양 (고양시청)	'24	대화동, 장항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1.25
	화성동탄테크노폴 (화성산업진흥원)	'24	영천동, 오산동, 방교동, 석우동, 안녕동, 봉담읍	2.11
강원	춘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01	후평동, 삼천동	0.80
	원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00	태장동, 흥업면	0.34
충북	오창 (충청북도/충북지식산업진흥원)	'02	오창읍, 옥산면	1.34
충남	아산 (충남테크노파크)	'01	탕정면, 음봉면, 직산면	2.76
전북	전주 (전주시/전주벤처촉진지구발전협의회)	〃	팔복동, 장동	0.85
전남	유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2.87
경북	포항 (포항테크노파크)	〃	지곡동, 효자동	2.13
	구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2	공단동, 신평동	3.61
경남	창원 (경남테크노파크)	〃	내서읍	0.79
제주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4	이도1동, 이도2동	5.50
계	**30개 지구**			84.53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내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旣지원 내역

○ **벤처지구 인프라구축** : 2001년~2007년 까지 국비 총 1,366억원

- (지원용도) 벤처지구 지원센터 건립, 공동장비 확보 등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집적 촉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총투자액	**60,817**	**95,624**	**67,817**	**47,631**	**20,375**	**9,480**	**4,200**	305,945
정부 재정지원	29,960	40,000	30,000	20,000	10,000	4,500	2,100	136,560
지자체 투자	30,857	55,624	37,817	27,632	10,375	4,980	2,100	169,385

○ **입주기업 지원** : 2010년~2016년 까지 국비 총 56.6억원

- (지원용도) 경영·기술 혁신 컨설팅, 입주기업과 연구소·대학·유관기관 간 기술협력 및 아이디어 공유·유합 등을 위한 협업체 활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국비지원	550	1,100	900	900	900	810	500	**5,660**

□ 지방세 감면 내역 ※ 지방세통계연감(행안부) 참조

(단위 : 건, 천원)

구분	취득세		재산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979	28,090,865	8,524	2,685,785
2012	70	914,732	399	117,406
2013	97	3,709,367	270	103,410
2014	90	2,803,564	375	130,015
2015	101	1,561,933	518	167,045
2016	60	826,233	587	185,439
2017	46	1,064,051	587	200,693
2018	65	1,377,920	638	204,805
2019	75	1,050,337	718	253,118
2020	77	1,304,460	824	270,756
2021	71	1,573,198	845	275,654
2022	69	2,913,858	895	295,253
2023	92	4,573,059	854	231,856
2024	66	4,418,153	1,014	250,335

4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일반 현황('25년말 기준)

□ 설치목적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법)』 제63조에 의거, **1978년도에 설치, 1979년부터 기금 운용을 개시**

□ 기금성격

○ 관리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진흥법 제66조)

○ 기금유형 : 사업성 기금(국가재정법상 68개 기금)

□ 재원조성 및 운용내역 ('25년말 기준)

○ (조 성) 총 29조 8,571억원

- 기금 재원은 주로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

항 목	금액 (억원)	비중 (%)
• 부채	244,698	82.0
- 채권발행	243,307	81.5
- 충당부채 등	1,391	0.5
• 순자산(자본)	53,873	18
- 기본순자산	20,571	6.9
- 적립금 및 잉여금	30,327	10.1
- 순자산조정	2,975	1
계	**298,571**	**100.0**

* ('09.1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기금명칭 변경(약칭 중진기금)

○ (운 용) 대출금이 전체의 71.6%를 차지

항 목	금액 (억원)	비중 (%)
• 중소기업대출금	213,829	71.6
• 투자자산	75,853	25.4
• 업무용자산	3,622	1.3
• 사업대기성자금 등	5,267	1.7
계	**293,464**	**100.0**